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,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현행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노동복지시설 위탁 대상을 상위법인 「근로복지기본법」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으며, 운영이 종료된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.
- 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,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노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- ☐ 다음으로 현행 조례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‘노동자복지시설’,

‘노동복지시설’, ‘노동자복지관’ 용어에 대하여 본문의 경우 조례의 해석 및 집행 과정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춰 통일하였습니다.

- 또한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복지시설은 현행화하고 이용료는 시설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.
-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, 나아가 노동복지시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여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